

[무배당 AXA간편상해보험2501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무배당 AXA간편상해보험2501

① 1종 간편고지형

② 2종 일반고지형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자동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 법률상의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1) 1종 간편고지형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 약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고지)	10/20년	전기납	30~80세	월납 연납
	일반상해수술(간편고지)				
특별 약관	상해수술(1~8종)(시술포함)(간편고지)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간편고지)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간편고지)				
	일반상해골절수술(간편고지)				
	5대골절진단(간편고지)				
	5대골절수술(간편고지)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간편고지)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간편고지)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간편고지)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간편고지)				
	상해척추손상수술(간편고지)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간편고지)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간편고지)			30~60세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				
상해사망(간편고지)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11급)(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3급)(운전자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용)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운전자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14급)(비운전자)			30~80세	
자동차사고부상(1~11급)(비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1~3급)(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비운전자)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비운전자)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비운전자)				
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				
깁스치료비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비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변호사선임비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물)(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보이스피싱손해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최초	5년	전기납	30세~80세	연납월납
						갱신	5년	전기납	35세~95세	연납월납
제도성 특별 약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	-	-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 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 선지급)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 직접지급									

(2) 2종 일반고지형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 약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0/20년	전기납	30~80세	월납 연납
특별 약관	일반상해수술				
	상해수술(1~8종)(시술포함)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술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일반상해화상진단				
	일반상해화상수술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				
	상해척추손상수술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상해사망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11급)(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3급)(운전자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용)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운전자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운				

전자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14급)(비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1~11급)(비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1~3급)(비운전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비운전자)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비운전자)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비운전자)				
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응급실내원비(응급)				
깁스치료비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별금비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변호사선임비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별금(대물)(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				

	사포함)(운전자용)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보이스피싱손해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최초	5년	전기납	30세 ~80세	연납 월납
제도 성 특별 약관		갱신	5년	전기납	35세 ~95세	연납 월납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 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 선지급)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 직접지급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당사 기가입자 보험료 할인

가. 할인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시점에 당사 장기보험/자동차 보험/일반보험(1년미만 단체 또는 제후보험 제외)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경우. (다만, 계약체결당시 유효한 계약에 한함)

나. 할인금액 및 할인적용방법

계약체결시점에 할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초회보험료부터 영업보험료의 3% 할인을 적용함.(계약체결시점에 할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갱신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8. 갱신탁약에 관한 사항

가. 대상 특별약관

-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나.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상기 특별약관의 갱신주기 :5년마다 자동갱신 됨

- 갱신보험료의 계산

상기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함)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함

갱신보험료의 안내

회사는 상기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 등으로 안내함
- 다. 보험료 납입방법
- 상기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운전및 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17.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 등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함.

가.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나.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다.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라.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림.
 - (3)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 (4)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하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18. 기타

- (1)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2)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3)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4) 판매채널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① 적용근거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 ② 적용범위 :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정보보험료로 처리 가능.
 -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환 가능
- (6) 1종(간편고지형)은 유병력자 등 2종(일반고지형)과 같은 일반고지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함.
- ① 간편고지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함.
- ② 계약자가 1종(간편고지형) 가입시 회사는 1종(간편고지형)과 2종(일반고지형)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2종(일반고지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함. 상기 계약자에게 안내한 사항에 대한 확인(【별첨1】간편고지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참조. 이하 ‘간편고지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이라 함)을 받아야 함. 다만,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확인 받을 수 있음.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약자가 ‘간편고지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전화를 이용하여 ‘간편고지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경우
- ③ 회사는 1종(간편고지형) 가입을 위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간편고지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별첨2】간편고지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참조)을 적용함.
- ④ 회사는 계약자가 1종(간편고지형)의 최초계약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일반고지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하여 2종(일반고지형)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⑤ ④에 의하여 2종(일반고지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줌.
- ⑥ 계약자가 1종(간편고지형) 가입시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인수심사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활용하지 않음.
- ⑦ 회사는 계약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일반고지형 상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1종(간편고지형)을 추가로 가입하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 하여 2종(일반고지형)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함. 다만 해당 일반고지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⑧ 회사는 ⑦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유병력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 1종(간편고지형) 계약의 청약을 거절함.
- ⑨ 회사는 2종(일반고지형)의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1종(간편고지형)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함.
- (7)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간편고지) 특별약관, 상해척추손상수술(간편고지) 특별약관 및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간편고지) 특별약관의 경우, 일반상해수술(간편고지)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8)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 특별약관, 상해척추손상수술 특별약관 및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 특별약관의 경우, 일반상해수술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9)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특별약관 또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특별약관을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특별약관을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10)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특별약관 또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특별약관을 가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담보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11)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과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2)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특별약관과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3)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특별약관,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특별약관,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4)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과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5)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과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6) 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 특별약관과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7)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과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18)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특별약관 및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특별약관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 (19)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및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특별약관의 경우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 (20) 아래의 특별약관의 경우, 비운전자는 가입 불가함.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부상(1~11급)(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부상(1~3급)(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용)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운전자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별금(대물)(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별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21) 아래의 특별약관의 경우, 자가용, 영업용 운전자는 가입 불가함.

- 자동차사고부상(1~14급)(비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1~11급)(비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1~3급)(비운전자)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비운전자)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비운전자)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비운전자)
- 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 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별약관

3. 적용대상계약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

- (1)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계약
- (2)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분할납입금액이 1천원 이상인 계약
- (3)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해당 계약의 정산액 발생시점 해약환급금 이하인 계약
- (4) 기본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는 계약
- (5) 단체취급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 (6) 정산액 발생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의 잔액이 없는 계약
- (7)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계약

4. 적용대상 정산액 및 분할납입금액에 관한 사항

- (1)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은 해당 계약에서 정산액이 발생한 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각각의 정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자동갱신되는 선택계약의 정산액은 제외함
-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분할납입금액 및 최종분할납입금액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함
- (3)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분할납입기간 중 중도에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직전 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함

5. 분할납입기간에 관한 사항

- (1) 이 특별약관에서 분할납입기간은 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이내로 운영함. 단,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분할납입기간을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이내로 함
- (2) 이 특별약관의 체결 시점에 정해진 분할납입기간은 그 이후에 다시 변경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따름

【별첨 1】

간편고지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상품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고지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1종(간편고지형)은 2종(일반고지형)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고지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고지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종(일반고지형)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

상품명	1종(간편고지형)	2종(일반고지형)
보장내용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고지) 5천만원: 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5천만원 - 5대골절진단(간편고지) 20만원: 5대골절 진단시 20만원 - 5대골절수술(간편고지) 50만원: 5대골절 수술시 50만원 - 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 2만원: 응급실 내원시 2만원 -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간편고지) 5백만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시 5백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간편고지) 1백만원 : 중대한 특정상해로 수술시 1백만원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5천만원: 상해로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5천만원 - 5대골절진단 20만원: 5대골절 진단시 20만원 - 5대골절수술 20만원: 5대골절 수술시 50만원 - 응급실내원비(응급) 2만원: 응급실 내원시 2만원 -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5백만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시 5백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1백만원 : 중대한 특정상해로 수술시 1백만원
계약승낙 여부	일반고지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40세 남자 ○○○원 ※ 기준 :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40세 남자 △△△원 ※ 기준 :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보험설계사 _____ (인/서명)

[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 으(로)부터 위 내용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계약자 _____ (인/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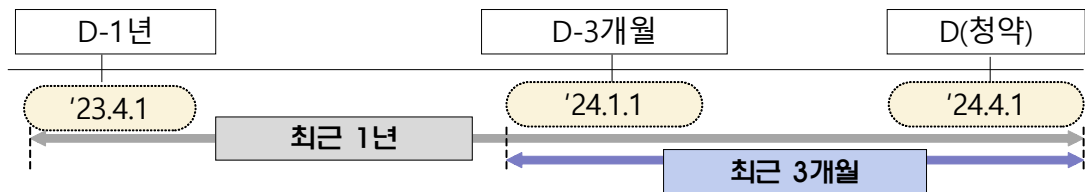
【별첨 2】

간편고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4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알릴 의무 기간으로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제외)을 받은

외부 환경

년월일 AXA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